

2018년도 생활체육 농구대회 규정(안)

제1조 (참가자격)

- 제1항 ① 2018년도 팀등록을 한 팀에 한정한다(등록비 납부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칙을 준용).
- ② 본 회에 당해연도 등록을 하지 않은 팀은 대한민국농구협회, 시·도농구협회, 시·군·구농구협회에서 주최,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.
- ③ 대회 및 종별 구분에 따라 각 시/도별 등록팀원에 한해서 연합팀 구성이 가능하다.

제2항 대회 종별 구분에 따라 시/도 대표팀 선발전 및 시/도 선발 예선전을 통과한 팀으로 시/도 추천을 통해 참가하며, 종별 참가팀이 8팀 이하 시 전국 단위 등록 클럽 및 종별 구분 단위로 자율 접수할 수 있다.

- 제3항 ① 대학부는 단일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가 출전해야 한다.
- ② 시·도가 다른 캠퍼스의 대학은 캠퍼스 소재지별로 참가하여야 한다(동일 대학이라도 다른 캠퍼스 선수와 연합하여 출전할 수 없다)
- ③ 전문체육출신자(고교등록자)는 경기 중 2명 이하 출전해야 한다.

- 제4항 ① 20대부는 전원 98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(만20세 이상)
- ② 전문체육출신자(고교등록자)는 경기 중 2명 이하 출전해야 한다.

- 제5항 ① 30대부는 전원 88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
- ② 전문체육출신자(고교등록자)는 경기 중 2명 이하 출전해야 한다.
- ③ 경기 중 83년생(만35세) 포함 이전 출생자가 필히 2명이 잔류해야 한다.
(수도권 2명 잔류(서울,경기,인천), 비수도권 1명 잔류)

- 제6항 ① 40대부는 전원 78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
- ② 전문체육출신자(고교등록자)는 경기 중 2명 이하 출전해야 한다.
- ③ 69년생 이전자(50세)가 필드골 득점시 + 1점제
- ④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은 경기 중 73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가 필히 2명이 잔류해야 한다. (비수도권 잔류규정 없음)
- ⑤ 40대부는 팀등록 사이트 기준 팀등록 현황으로 구분하며, 꽃중년방의 이중등록은 전국대회에 허용되지 않는다.

- 제7항 ① 클럽부의 경우 이적기간(1월/7월) 이후 팀등록 사이트에 등록된 단일팀으로만 출전이 가능하다.
- ② 클럽부 디비전Ⅲ는 전문체육출신자(고교등록자)는 경기 중 2명 이하 출전할 수 있다.
- ③ 클럽부 디비전Ⅳ는 전문체육출신자(고교등록자)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

- 제8항 ① 여성(전문체육출신자 포함)선수는 필드골에 한해 +1점제 적용, 여성선수는 전문체육출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제9항 모든 종별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는 전문체육출신자에 포함되며, 경기중 2명 이하 잔류 기준에 포함된다,

제10항 신분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몰수 및 선수출전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과거의 전국대회 출전경력이 확인된 경우 출전시킨다.

제2조 (계시규정)

제1항 쿼터(정규 7분 4Q, 패자부활전조 10분 전후반-대회 운영에 따라 변경 가능))

제2항 타임아웃은 전반 20초 1회 / 40초 1회, 후반 20초 1회 / 40초 2회

제3항 연장전 3분 (타임아웃 40초 1회)

제4항 경기시간은 all-dead한다. (주최/주관 단체의 따라 변경 가능하다.)

제5항 연속경기는 패자조 10분과 정규조 30분 후 속개한다

제6항 이외 모든 계시규정은 FIBA룰을 준수한다.

※초,중학부 10분 전후반, 고등부 10분 전후반 또는 7분 4Q(대회 종별에 따라 변경가능)

제3조 (파울, 타임아웃 규정)

제1항 개인파울 5반칙 이상은 퇴장으로 한다.

제2항 한 선수가 테크니컬 반칙1개와 언스포츠클라이크 반칙(U파울)1개를 받았을 때에 해당 경기의 남은 시간 동안 퇴장 당한다. 플레이닝 코치 또한 이와 같다.

제2항 팀파울은 매 쿼터 5개 이상 시 자유투 2구를 수도한다.

(패자조 경기(10분 전·후반)는 전·후반 각각 8개 이상 시 자유투 2구를 수도한다.)

제3항 타임아웃은 벤치에서만 요청할 수 있으며 데드 상황에만 적용이 된다.

제4항 이외 모든 파울, 타임아웃 규정은 FIBA룰을 준수한다.

제4조 (경기 및 득점, 종합채점)

제1항 ① 경기예정시간 보다 7분 이내에 코트에 출전하지 않을 시 몰수패를 선언한다.

② 경기시작 시간이 지나고 7분 이내에 출전시 T파울과 자유투 1구로 주고 점볼로 시작한다.

③ 몰수패가 있는 팀은 본선 또는 결선 경기에 올라갈 수 없다.

제2항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농구대회 종합 점수

① 종합점수는 각 종별 1위 30점, 2위 20점, 공동3위 10점으로 한다.

② 종합 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승, 준우승, 3위순으로 상위 입상이 많은 단체가 우선순위가 되며, 상위 입상 까지도 동점일 경우에는 전종별 참가팀이 우선순위가 되며,

③ 참가팀도 동점일 경우에는 결승전 총득점수가 많은 단체로 하고, 그래도 동률 일때는 동물팀들의 결승전 총 득점수-총 실점으로 한다.

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종합 점수

- ① 전종별 참가 점수 30점으로 한다.
- ② 종합 점수는 각 종별 1위 30점, 2위 20점, 공동3위 10점으로 한다.
- ③ 종합 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승, 준우승, 3위 순으로 상위 입상이 많은 단체가 우선순위가 되며,
- ④ 상위 입상팀도 동점일 경우에는 결승전 총득점수가 많은 단체로 하고 그래도 동률일 때는 동률팀들의 결승전 총경기 총 득점수-총 실점으로 한다.

제5조 (팀 유니폼 및 장비) ※ 2018년도는 권장사항

- 제1항 상의와 하의는 동일한 주 색상이어야 하며, 상의에 소매가 있다면 반드시 팔꿈치 위에 위치해야 한다.
- 제2항 양말은 보여야 한다.
- 제3항 신발 색상의 구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양 발의 신발이 같아야 한다.

제6조 (상벌제)

- 제1항 선수 간 폭력/폭언, 부정선수 출전, 심판폭언 선수 및 임원, 경기보이콧, 정당한 사유 없는 기권, 시상을 포기한 팀에 대해 각종 대회에 당해선수 36개월 정지 및 단일팀 1년간 출전정지 (단, 선발 시도팀일 경우 차기대회에 출전금지)
※ 연합팀일 경우 선수명단에 있는 선수 전원 해당
- 제2항 선수, 감독, 코치가 퇴장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1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.
- 제3항 관중이라도 경기를 방해하는 행위 시 관중을 퇴장시킨다.
- 제4항 본 규정 제5조 제1,2,3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대회에 일어나는 문제상황 발생시에는 대회 임원(임원, 감독관, 심판 등)으로 구성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되며, 제5조 제1,2,3항의 과도한 행위나 이외에 문란행위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회부, 의결 할 수 있다.

제7조 (사용구) 대한민국농구협회 생활체육대회 공식구 : 스타 농구공 BB337

제8조 (상해보험) 참가자 개인 별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본회는 주최자보상보험으로 처리하며, 본회와 개최지는 각 체육관 별 의료진 1명을 대기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인근병원으로의 이송체계를 마련한다. 본회 행사의 주최, 주관단체는 주최자보상보험에 한하여 보상하며, 주최자보험 이외의 보상, 배상과 기타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.

제9조 (소 청) 대회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의 제기는 주장이 경기종료 때 주심이 기록지에 서명하기 전에 즉시 소청란에 서명 하여야 하며, 30분 안에 팀은 그

경우의 설명을 서면 문서 제출과 공탁금 10만원을 주최측에 납부하여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업무는 대회 소청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10조 팀 등록제 규정 (2019년도부터 7만원 적용, 이후 세부규정 제정)

제1항 팀 등록비는 매년 4만원을 납부하도록 한다.(당해년도 3월말일까지 연 4만원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하며, 신규는 년중 수시등록 가능하다.)

제2항 팀 등록 사이트 운영 및 이적(가입/탈퇴)은 팀 등록비 납부와 일시 연계하도록 한다.(매년 팀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팀은 사이트에 표출 안됨)

제3항 이중등록(직장부, 40대 꽃중년방)은 대한민국농구협회 주최, 주관 대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.

※ 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농구협회 주최, 주관 대회와 시.도 대회 / 시,군,구의 주최,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, 연합팀의 경우에도 구성원(구성원의 팀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)이 등록하지 않으면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.